

##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 가.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9. 7. ~ 9. 18. (14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관 외 6명 (실지감사)

### ■ 감사내용

○ 2012년 ~ 2015년 현재까지 기관 운영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감사결과

(단위 : 천 원, 건)

| 합계 |        |    | 신분상 조치 |    | 재정상 조치 |        | 행정상 조치 |    |    |
|----|--------|----|--------|----|--------|--------|--------|----|----|
| 건수 | 금액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금액     | 시정     | 주의 | 통보 |
| 23 | 46,016 | 4  | 1      | 4  | 5      | 46,016 | 6      | 8  | 3  |
|    |        |    |        |    |        |        |        |    |    |

\* 첨부서류 :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

## 감사처분 요구내용

| 연번 | 지 적 내 용  | 조 치 사 항(안)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전문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임차물 관리 세부규정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인단과 감정전문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09~'14, 15명), 감정 결과를 해당 감정인이 소속된 감정전문위원회에 부적정하게 회부·심의('09~'14, 6건)</li> <li>- 임차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2개의 동일 임차물을 서울과 진주의 임차금고에 각각 보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처리절차, 임차금고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등에 대한 세부규정 없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및 통보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전문위원회 운영 시정 및 임차물 세부규정 마련 요구</li> </ul> </li> </ul>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 미실시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R&amp;D)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은 관련 위원회 승인 후 구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li> <li>- 2012년 연구개발(R&amp;D)과제 “저작물 전송관련 로그정보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저작권 기술 연구 개발”의 공동 수행기관이 연구장비를 관련 위원회 승인없이 구입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정산 확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등 업무 철저 및 관련자 주의요구</li> </ul> </li> </ul>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확보 대책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안대책 및 연구윤리 확보 대책 미 수립</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대책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 요구</li> </ul> </li> </ul>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경상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표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의 보조사업자는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사용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방안마련 요구</li> </ul> </li> </ul>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 견적입찰을 특정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9건), 입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1건), 수의계약 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계약(1건)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시 국가계약 법령 준수 등 계약업무 철저 요구</li> </ul> </li> </ul>      |

| 연번 | 지 적 내 용   | 조 치 사 항(안)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정산 등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전 인테리어 설계 및 시설공사를 하면서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지급(6,453,610원)</li> <li>- 시설공사 안전관리비에 대해 미사용 금액을 정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24,061,990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및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515,000원 환수 및 물품구매 및 시설 공사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정산업무 철저 요구</li> </ul> </li> </ul> |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이사비 부당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이사 견적은 1,060,000원 임에도 이사업체로부터 부풀린 견적서 및 현금영수증(1,850,000원)을 제출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이사비 부당 수령(790,000원)</li> <li>- 가족의 이사비용을 진주 허위 청구(2,090,000원)</li> <li>-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이삿짐 화물량 및 지원액 기준을 초과하는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지원기준 초과 물량을 단신으로 이주하는 직원과 함께 이사하는 방식으로 이사(이사비 전액 본인 부담)하고, 단신 이주 직원이 지급 받은 이사비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사비 부당 수령</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책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요구</li> </ul> </li> </ul>                           |

| 연번 | 지적내용   | 조치사항(안)   |
|----|--|---|
|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이사비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이사비가 1,060,000원임에도 1,850,000원의 허위 증빙자료로 부풀려 청구하여 790,000원 부당 수령</li> <li>- 가족의 이사비용을 자신의 이사비용으로 허위 청구하여 2,090,000원 부당 수령</li> <li>- 지원 기준 초과 화물을 단신 이주 직원과 함께 이사하는 방식으로 이사하고, ○○○ 단독 이사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1,655,800원을 돌려 받음→ ○○○ 단독 이사할 경우 약 1,200,000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455,800원 부당 수령</li> <li>- 지원 기준 초과 화물을 단신 이주 직원과 함께 이사하는 방식으로 이사하고, ●●● 단독 이사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1,540,000원을 돌려 받음→ ●●● 단독 이사할 경우 약 1,300,000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40,000원 부당 수령</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및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비 부당 수령액 3,575,800원 환수 및 부당 수령을 협조·방조한 관련자 주의 요구</li> </ul> </li> </ul> |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 국외출장여비 정산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일비의 1/2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액 지급(2건, 624,380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하게 지급된 일비 624,380원 환수</li> </ul> </li> </ul>                                |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관인 위원회는 배우자가 공무원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2007년부터 가족수당 지급(3,600,000원)</li> <li>- 위원회 직원 2명은 부양가족이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세대를 달리하여 가족수당 지급 자격요건을 상실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수당 계속 지급(1,800,000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및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5,400,000원 환수 및 관련자 주의 요구</li> </ul> </li> </ul>           |
|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파견 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시 지급제외 항목을 포함시켜 과다 지급(5,902,658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및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902,658원 환수 및 관련자 주의요구</li> </ul> </li> </ul>                           |

| 연번 | 지 적 내 용   | 조 치 사 항(안)  |
|----|---|---|
|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임용 업무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의 3배수내에서 심의 · 의결 후 승진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승진후보자명부에 있는 전체 인원을 심의 · 의결함</li> <li>- 1급으로 승진임용시 제척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인사 위원 전체를 배제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없이 승진자 결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임용 시 위원회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 및 승진임용업무 철저 요구</li> </ul> </li> </ul> |
|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주 사옥 임차보증금(3,535백만 원) 및 해외 임시사택 임차보증금(32백만 원)을 기본재산 목록 및 결산서에 누락하여 관리</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정관」 제22조 및 「회계규정」 제44조에 따라 기본재산 관리 철저 요구</li> </ul> </li> </ul> |